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77
----------	------

2021년 9월 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8월 10일, 봉양순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 다. 상정일자: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봉양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자원순환우수업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 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1회용 컵 등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재활용폐기물의 배출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시는 그동안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및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및 동부병원 등의 시립병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 사업<sup>1)</sup>을 추진하였고, 대표적인 체육시설 중 하나인 고척스카이돔에서도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sup>2)</sup> 등을 추진하였지만, 이들 대부분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큰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음.

1) 서울의료원 친환경장례시범사업 참여('18. 11.~)

동부병원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친환경 식탁보 사용('18. 11.~)

보라매병원 다회용 식기 사용 시범운영('19. 9.~) 등

2) 고척스카이돔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1.4.3.~'21.7.1.(※ 코로나19로 관람석의 10% 입장(최대 1,674명))

▶ 시범장소: 고척돔 야구장(키움히어로즈 야구단 홈 37경기)

▶ 사업방법: 운영방식을 4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 후 최적의 다회용컵 사용방안을 도출

-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함.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1회용품의 판매 금지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시설 이용 시민들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금지라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향후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에 대해 자원순환우수 업소로 지정하고 해당 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민간 부문의 참여 확산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공공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 현황〉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
장례식장	동대문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장례식장	무학로 124
	중랑	서울의료원장례식장	신내로 156
	동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보라매로5길 20
	강남	서울의료원강남분원	봉은사로114길43
체육시설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경인로 430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로 240
	중구	장충체육관	동호로 241
	송파구	잠실 야구장	올림픽로 25
	양천구	목동 주경기장	안양천로 939
	양천구	목동 야구장	안양천로 939
	양천구	목동 빙상장	안양천로 939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	올림픽로 25
	송파구	잠실 보조경기장	올림픽로 25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	올림픽로 25
	송파구	잠실 제1수영장	올림픽로 25
	송파구	잠실 제2수영장	올림픽로 25
	용산구	효창운동장	효창동 3
	양천구	신월야구장	남부순환로 64길 26
	광진구	구의야구장	구의동 164-5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생 략) &lt;신 설&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p> <p>④ ~ ⑤ (생 략)</p> <p><u>제9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u></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u></p> <p>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u>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u></li> <li>2. <u>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u></li> </ol>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